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66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문대림 · 윤준병 · 정춘생
김한규 · 이기현 · 임호선
송옥주 · 양문석 · 부승찬
문금주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선박 이용 증가, 해양공간 활용 방식의 다각화 등 해상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 설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해양시설에 포섭되어 있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해역의 해상교통 및 수역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가 선박운항자, 해양시설 사업자 등 해역이용자의 조화로운 해역이용 지원을 위해 선박통항량이 밀집된 해역을 해상교통로로 공표(‘24. 12.)하였으나, 법률상 해상교통로에 대한 개념이 정립

되어 있지 않아 그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해양안전 체험활동 및 해양안전캠페인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 수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시설의 범위에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해상교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선박통항량이 많은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개정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자원의 탐사·개발”을 “자원 및 전력의 탐사·개발·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상교통로”란 선박의 빈번한 운항 또는 잦은 항만 입출항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교통흐름과 선박통항량이 많은 곳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5의3. “해상교통시설”이란 항만, 어항, 수로 및 수역에서 선박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해상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선박교통관제시설·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항로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중 “연안해역”을 “연안해역, 해상교통로”로, “평가”를 “평가(이하 “해상 교통영향 평가”라 한다)”로, “각종”을 “해상교통로를 고시하고, 각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상교통관리시책”을 “해상교통관리시책과 해상 교통영향 평가”로, “따로 법률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해양안전문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해양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해양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제28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 및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해양시설”이란 <u>자원의 탐사·개발</u> ,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한다)인 것을 말한다.	3. ----- <u>자원 및 전력의 탐사·개발·생산</u> ----- ----- ----- ----- -----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u><신설></u>	5의2. “ <u>해상교통로</u> ”란 선박의 빈번한 운항 또는 잦은 항만 입출항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교통흐름과 선박통항량이 많은 곳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u><신설></u>	5의3. “ <u>해상교통시설</u> ”이란 항만, 어항, 수로 및 수역에서 선박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

	<u>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해상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선박교통관제시설·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항로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① (생 략)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u>연안 해역</u>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u>평가</u>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각종</u> 해상교통시설을 <u>설치·관리</u> 하여야 한다.	② ----- ----- ----- <u>연안 해역, 해상교통로</u> ----- <u>평가</u> (이하 “해상 교통영향 평가”라 한다)----- ----- <u>해상교통로</u> 를 <u>고시</u> 하고, <u>각종</u>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해상교통관리시책</u> 의 수립·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u>따로 법률로</u> 정한다.	③ ----- <u>해상교통관리시책과 해상 교통영향 평가</u> ----- <u>대통령령</u> 으로-----.
제21조(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생 략)	제21조(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9조(비밀유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해양안전문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해양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해양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비밀유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상 교통영향 평가 업무 및 제28조제2항-----

-----.

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
하다.

---.